

**2017학년도 제4차**  
**<제331차 이사회 회의록>**

2017. 12. 21.

**학교법인 대우학원**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17학년도 제4차

### 〈제33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2 인

1. 일 시 : 2017. 12. 21(목) 07:30 ~ 14:30 (회의소집 통보일 : 2017년 12월 13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11인)
- . 감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교무처장 장우진,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3인)
-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장우진 교무처장이 아주대학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31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7-129호(2017.12.13)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 제2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의안 제3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의안 제4호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6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의안 제7호 아주대학교 총장 선임(안) 등 7개의 안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 8. 심의내용

### 제 1 호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임금체계 개편, 보수지급일의 변경, 가족수당 지급기준 간소화 및 현실화, 직책수당 조정을 통한 보직수행 동기 부여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의 신규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지 7.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지 7. <현행과 같음>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8.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군필수당) 및 제2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의 연 400%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여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p> <p>&lt;이하생략&gt;</p>	<p>8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군필수당) &lt;삭제&gt;을 말한다. &lt;삭제&gt;</p> <p>&lt;이하생략&gt;</p>
<p>제5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u>별표1 직원 호봉표</u>(이하 “별표1”이라 한다)와 <u>별표2 제수당지급기준표</u>(이하 “별표2”라 한다)상의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매회계년도별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p>	<p>제5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u>별표1 직원 호봉표</u>(이하 “별표1”이라 한다)와 <u>별표2 제수당지급기준표</u>(이하 “별표2”라 한다)상의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매회계년도별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정한다.</p>
<p>제6조(보수계산) ① 교원의 연봉 계산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p> <p>② 직원의 월보수 계산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p> <p>③ 교직원 임면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월보수 전액을 지급한다.</p> <p>1. 본인 사망</p> <p>2.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해당 월 16일 이후 면직할 경우</p>	<p>제6조(보수계산) 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lt;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lt;삭제&gt;</p>
<p>제7조(보수지급) ①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월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수지급일이 <u>공휴일인 때는</u> 그 전일에 지급한다.</p> <p>②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명의로 계좌로 지급한다.</p>	<p>제7조(보수지급) ①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월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수지급일이 <u>휴일인 때는</u> 그 전일에 지급한다.</p> <p>② &lt;현행과 같음&gt;</p>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협

이사

이명현

현행	개정
<p>제11조(직책수당) ① 교직원이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u>별표2에서 정한 직책수당</u>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직책을 겸직할 경우에는 최상위 직책의 직책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직책수당) ① 교직원이 직책을 부여받은 경우 <u>별표2에서 정한 직책수당</u>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제16조(가족수당) ① <u>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별표2에서 정한 가족수당</u>을 지급하되, 제2항 각호의 순서대로 4인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p> <p>② 부양가족이라 함은 <u>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u>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우자</li> <li>2. 본인의 만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60세 미만 부모 중 불구폐질자</li> <li>3.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대학(교)에 진학한 자는 법정 수업연한</li> <li>4.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불구폐질자</li> <li>5.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불구폐질자</li> <li>6. 부모가 사망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만 20세 이상 형제자매 중 불구폐질자</li> </ol> <p>③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이 타직장에서 이중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④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p>	<p>제16조(가족수당) ① <u>세대주인 교직원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다음 각 호의 가족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가족수당</u>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lt;삭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우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li> <li>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서 만60세 이상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li> <li>3. 만 22세 미만의 자녀</li> <li>4. &lt;삭제&gt;</li> <li>5. 만 22세 이상의 자녀 중 중증장애를 가진 자</li> <li>6. &lt;삭제&gt;</li> </ol> <p>③ &lt;현행과 같음&gt;</p> <p>④ &lt;현행과 같음&gt;</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⑤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해당 금액을 <u>변상</u>하여야 한다.</p>	<p>⑤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해당 금액을 <u>반환</u>하여야 한다.</p>
<p><b>제23조(자녀학비보조수당)</b> ① 교직원(외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국내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u>3월, 6월, 9월, 12월</u>에 별표2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p> <p>② 자녀가 외국의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내 국공립 고등학교 학비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p> <p>③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li> <li>2. 자녀가 재학 중 퇴학, 휴학 등 신분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④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타직장에서 이종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해당금액을 <u>변상</u>하여야 한다.</p>	<p><b>제23조(자녀학비보조수당)</b> ① 교직원(외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이 국내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u>매분기 마지막 월(5월, 8월, 11월, 2월)</u>에 별표2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lt;현행과 같음&gt;</p> <p>④ &lt;현행과 같음&gt;</p> <p>⑤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해당금액을 <u>반환</u>하여야 한다.</p>
<p><b>제24조(기타)</b> ① 특별임용교원의 보수는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을 따른다.</p> <p>② 임상(연구)강사, 전공의의 보수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의 보수는 총장이, 계약직의 보수는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교직원이 진료, 수술, 시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을 한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p>	<p><b>제24조(기타)</b> ① 내지 ③ &lt;현행과 같음&gt;</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명현

현 행	개 정
<p>④ 보수 중 상여금, 가족수당, 휴가비, <u>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보수지급일 재직자 중 해당 월 16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보수일에 지급한다.</u></p> <p>⑤ 직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업적 및 실적 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p> <p>⑥ 강의료, 교재개발, 심사비, 자문비, 학생활동지도비, 논문심사 및 지도비 등 연봉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p>	<p>④ 보수 중 상여금, 가족수당, 휴가비, <u>&lt;삭 제&gt;는 해당 월 1일부터 25일까지 만근한 자에게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u></p> <p>⑤ 내지 ⑥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직책수당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② (가족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만 22세 이상이 되어도 대학(교) 법정수업 연한까지 지급한다.</p>

## 제 2 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본교 임용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11명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2명이 임용 제청되었습니다. 재임용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보장 교수 1명, 정년트랙 전임교원 부교수 2명, 조교수 4명이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부교수 2명, 조교수 4명이 재임용 제청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다음으로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부교수 1명, 조교수 12명이 임용 제청되었습니다.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총 13명으로 부교수 6명, 조교수 7명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여 임용 제청 되었습니다. 신규·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택 :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화학공학과	임재훈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환경안전공학과	이제찬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환경안전공학과	이창구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건축학과	이황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소프트웨어학과	박상용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수학과	안수현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화학과	이인환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화학과	유영동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생명과학과	박대찬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경영학과	김재현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사회학과	김한상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소프트웨어학과	Paul Rajib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조교수	2018.3.1 ~ 2020.2.28 (2년)
	소프트웨어학과	김도형	(비정년트랙 연구중점) 조교수	2018.3.1 ~ 2020.2.28 (2년)
	의 료 원	해부학교실	박선아	부교수
의료정보학과		박범희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호흡기내과학교실		정우영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명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감염내과학교실	허중연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알레르기내과학교실	신유섭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정신건강의학교실	손상준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정형외과학교실	이한동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안과학교실	정유리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마취통증의학교실	최종범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영상의학교실	한미란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영상의학교실	김현지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응급의학교실	안정환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응급의학교실	박은정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 이상 본교 13명 / 의료원 13명 -

나. 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약학과	박영준	교수	2018.3.1 ~ 정년
신소재공학과	류학기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전자공학과	지동우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사이버보안학과	곽진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경영학과	서성원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불어불문학과	송근영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법학전문대학원	임소연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소프트웨어학과	이환용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2018.3.1 ~ 2021.2.28 (3년)
약학과	김주희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조교수	2018.3.1 ~ 2021.2.28 (3년)
다산학부대학	서주영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조교수	2018.3.1 ~ 2021.2.28 (3년)
다산학부대학	신승훈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조교수	2018.3.1 ~ 2021.2.28 (3년)
국제대학원	Iain Watson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부교수	2018.3.1 ~ 2021.2.28 (3년)
교육대학원	신효정	(비정년트랙 교육중점) 조교수	2018.3.1 ~ 2021.2.28 (3년)
마취통증의학교실	김대희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소화기내과학교실	임선교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영상의학교실	하은주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응급의학교실	이지숙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정형외과학교실	박영욱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정형외과학교실	송형근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정형외과학교실	정준영	조교수	2018.3.1 ~ 2022.2.28 (4년)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혜진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영상의학교실	곽규성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응급의학교실	민영기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진단검사의학교실	박일중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핵의학교실	윤준기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순환기내과학교실	최소연	부교수	2018.3.1 ~ 2024.2.29 (6년)

- 이상 본교 13명 / 의료원 13명 -

제 3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장 신상행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은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 동의(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 제 4 호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은 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한 기관을 대우학원 설치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관련 조문을 상위법 조항으로 표기하였으며 직원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고용대상 기관을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 개정(안)을 논의하여 조문의 내용 중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형태의 명확성을 기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 제34조 ‘대우학원’ 을 ‘학교법인 대우학원’ 으로, 제35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고용된 때’ 를 ‘임시로 고용된 때’ 로 수정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수정 의결한 내용 외에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수정 의결한 내용 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34조 ‘대우학원’을 ‘학교법인 대우학원’으로, 제35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고용된 때’를 ‘임시로 고용된 때’로 수정하고 이 외에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직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4조(인사교류) 대학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u>법인사무처, 대학교(의료원 포함), 전문대학간에 학교장의</u> 제청에 따라 소속직원의 전보 및 파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34조(인사교류) 대학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u>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총장의</u> 제청에 따라 소속직원의 전보 및 파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35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li> <li>2. 천재지변 또는 전지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li> <li>3.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li> <li>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li> <li>5. 유학하게 된 때</li> <li>6.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6월까지의 병가기간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li> <li>7. 만 6세 이하의 <u>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u></li> <li>8.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기관에 고용된 때</li> <li>9. <u>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u></li> </ol> <p>(신 설)</p> <p>② 휴직중의 직원은 그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p>	<p>제35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지 6 (현행과 같음)</li> <li>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li> <li>8.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기관에 <u>임시로</u> 고용된 때</li> <li>9.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u>임시로</u> 고용된 때</li> <li>10.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장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제36조(휴직기간) 제35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휴양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 임면권자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i> <li>제2호 해당자는 3월 이내로 한다.</li> <li>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li> <li>제5호 해당자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li> <li>제6호 해당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li> <li>제7호 해당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임면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li> </ol>	<p>제36조(휴직기간) 제35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지 4. (현행과 같음)</li> <li>제6호 및 제10호 해당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li> <li>(현행과 같음)</li> </ol>
<p>제37조(휴직자의 보수) ①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한 자에 대하여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8할을 지급하며, 제36조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제35조 제2호 내지 제5호 해당자는 월일정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제35조 제6호 내지 제9호 해당자에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한다.</p>	<p>제37조(휴직자의 보수) ①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한 자에 대하여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8할을 지급하며, 제36조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제35조 제2호 내지 제5호 해당자는 월일정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제35조 제6호 내지 제10호 해당자에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한다.</p>
	<p><b>부칙</b>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 제 5 호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아주대학교 2017학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사용 불가한 3,754점(취득 금액 3,549,691,292원 / 잔존가액 0원)의 고정자산을 불용처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6 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발의.

본 법인 임원 중 2018년 2월 14일부로 임기만료 예정인 신희택 이사님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 제척사유에 따라 신희택 이사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겠습니까?

( 신희택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

이 사 장 : 그럼 신희택 이사님의 후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그 동안 대우학원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신희택 이사의 연임을 제청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연임을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신희택 이사의 연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니까?

( 참석이사 10인이 찬성하다.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그러면 참석이사 11인 중 신희택 이사 본인을 제외한 10인의 찬성으로 신희택 이사를 2018.2.15부터 임기 4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아울러 신희택 이사는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분으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교육이사로 선임합니다.

( 신희택 이사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취임을 승낙하다. )

▣ 대우학원 임원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직명	성명	임기	비고
이사장	추 호 석	2015.9.18 ~ 2019.9.17		이사장	추 호 석	2015.9.18 ~ 2019.9.17	
이 사	김 성 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 사	김 성 진	2015.6.4 ~ 2019.6.3	교육이사
이 사	윤 성 복	2017.4.28 ~ 2021.4.27		이 사	윤 성 복	2017.4.28 ~ 2021.4.27	
이 사	문 길 주	2016.3.31 ~ 2020.3.30		이 사	문 길 주	2016.3.31 ~ 2020.3.30	
<u>이 사</u>	<u>신 희 택</u>	<u>2014.2.15 ~ 2018.2.14</u>	<u>교육이사</u>	<u>이 사</u>	<u>신 희 택</u>	<u>2018.2.15 ~ 2022.2.14</u>	<u>교육이사</u>
이 사	김 성	2017.2.7 ~ 2021.2.6	교육이사	이 사	김 성	2017.2.7 ~ 2021.2.6	교육이사
이 사	박 상 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박 상 일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신 상 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신 상 협	2016.3.19 ~ 2020.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최 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최 홍	2016.3.19 ~ 2020.3.18	개방이사
이 사	이 영 현	2017.4.19 ~ 2021.4.18		이 사	이 영 현	2017.4.19 ~ 2021.4.18	
이 사	김 선 용	2016.2.7 ~ 2020.2.6		이 사	김 선 용	2016.2.7 ~ 2020.2.6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 사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감 사	문 휘 창	2017.6.29 ~ 2020.6.28		감 사	문 휘 창	2017.6.29 ~ 2020.6.28	개방감사
감 사	배 홍 기	2016.4.28 ~ 2019.4.27		감 사	배 홍 기	2016.4.28 ~ 2019.4.27	

## 제 7 호 아주대학교 총장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총장 선임(안) 발의.

본 안건은 대우학원 정관 제46조 제1항에 의거 제16대 아주대학교 총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총장 선출 관련하여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내·외에서 학교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총장을 모시기 위하여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천거위원회의 위원으로 총장후보자 천거를 진행하신 상임이사께서 천거위원회 운영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이영현 :**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 운영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는 2017.9.28. 법인 대표위원 3인, 대학평의회 대표위원 3인, 동문 대표위원 1인, 외부인사 대표위원 1인 등 총 8인으로 구성하여, 천거위원회 위원 천거와 공지에 따른 내·외부인사 개별지원의 방법으로 총장후보자를 접수하였습니다. 천거위원회는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접수된 6명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학문윤리 검증은 천거위원회 산하 학문윤리검증소위원회에서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천거위원회의 최종 평가 의견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11인 전원은 총장후보자 천거위원회 운영에 따른 천거보고 및 천거위원회 의견서를 검토하다.)

**이 사 장 :** 실력 있고 명망 높은 분들이 총장 후보자로 많이 천거되셨는데, 이 분들의 명예를 존중해 드리기 위해 천거된 총장후보자 명단, 선임 과정 및 득표수 등 이후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총장후보자 명단, 선임 과정 및 득표수는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험

이사 이 영 현

이 사 장 :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정회하고 빠른 시일내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속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총장 선임(안)은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차기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31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31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14시 3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17 년 12 월 21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 호 석
이 사	김 성 진	김 성 진
이 사	윤 성 복	윤 성 복
이 사	문 길 주	문 길 주
이 사	신 희 택	신 희 택
이 사	김 성	김 성
이 사	박 상 일	박 상 일
이 사	신 상 협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이 영 현
이 사	최 홍	최 홍
이 사	김 선 용	김 선 용
감 사	문 휘 창	문 휘 창
감 사	배 홍 기	배 홍 기